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19/2565호
국경 지대의 특별경제구역 대한 투자촉진 방안

투자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5호 및 국가 개발을 위한 중요 산업 투자촉진방안에 대한 투자위원회 고시 제9/2565호에 이어 국경 지대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사회경제적 성장을 지방과 지역 차원으로 골고루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제18조, 제31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을 고시한다.

1. 국경 지대의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경제특구개발위원회에서 특별경제구역과 투자 촉진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국경지대의 특별경제구역의 목표 활동은 본 고시에 첨부된 활동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3. 프로젝트가 목표 활동인 경우, 다음의 혜택과 권리가 부여된다.
 - 3.1 기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3.2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8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3.3 법인소득세 면제 종료일로부터 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5년 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 3.4 운영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교통편, 전기 및 수도 요금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3.5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하는 투자금액의 25%가 통상적인 감가상각비 외 추가적으로 공제된다.
 - 3.6 5년 간 수출용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3.7 비조세 혜택
4. 목표 활동은 다음과 같다.

Activity 5.2.5	공공 유틸리티용 건축용 자재 및 프리스트레스트(pre-stressed) 콘크리트 생산
Activity 5.4.15	건설 또는 가공산업(Fabrication Industry)용 금속 플랫폼 제조
Activity 6.4.2	소비재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예)플라스틱 포장 등
Activity 6.6.7	펄프 또는 종이(종이박스 등)로 제품 생산
Activity 7.2.4	산업 플랜드와 창고용 건축 개발

권리와 혜택은 다음과 같다.

- 4.1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4.2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8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 4.3 운영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교통편, 전기 및 수도 요금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4.4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하는 투자금액의 25%가 통상적인 감가상각비 외 추가적으로 공제된다.
- 4.5 5년 간 수출용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4.6 비조세 혜택

5. 만약 프로젝트가 투자위원회 고시 제9/2565호 국가 개발을 위한 중요산업 투자촉진방안에 따른 일반적인 활동이라면, 다음의 권리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 5.1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5.2 법인세 추가 3년 면제, 단 총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5.3 만약 프로젝트가 8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A1 또는 A2 그룹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종료일로부터 5년 간 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인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5.4 운영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교통편, 전기 및 수도 요금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5.5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하는 투자금액의 25%가 통상적인 감가상각비 외 추가적으로 공제된다.
 - 5.6 5년 간 수출용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 5.7 비조세 혜택

6. 프로젝트가 국경 지대의 특별경제구역인 나라티왓(Narathiwat)에 위치할 경우, 투자위원회 고시 제20/2565호 남부 국경 지역의 투자촉진 방안 또는 투자위원회 고시 제21/2565호 남부 국경 지역의 시범도시(model city) 촉진 방안에 따른 혜택이 부여된다.

본 고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유효하다.

고시일 2022년 12월 8일

쁘라윛 찬오차 장군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위원회 위원장

(비공식 번역본)

국경 지대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촉진 방안과 관련한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

활동	조건
(1) 농업, 어업 및 관련 산업	
1.1.2 동물 번식 또는 축산업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폐쇄형 하우스 시스템, 증발냉각 시스템, 물 및 사료 자동공급 시스템, 벡터 제어 시스템, 효과적인 환경 보호 및 영향 감소 시스템
1.1.3 도축업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전기마취법, 새클(shackle), 냉장저장, 냉각 시스템, 식육 품질 및 오염물 검사
1.1.4 심해어업	프로젝트는 수산부(Department of Fisheries)에서 해외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는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전, 그리고 법인세 면제 혜택 시행 전에 취득해야 한다.
1.2.1.2 특별한 성질을 지닌 식물을 원료로 한 변형전분 또는 전분의 제조	
1.2.1.3 천연 전분(native starch) 또는 생 밀가루(native flour) 제조	1. 친환경 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한다. 예) 물 재사용, 대기 오염 제어 등 2. 프로젝트는 국제환경표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예) ISO 14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 인증 인증은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시작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1.2.2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의 제조	
1.2.4.1 천연 고무 제품의 제조	제품은 원료 중량에서 51% 이상 천연 고무를 포함해야 한다.
1.2.4.2 1차 가공 고무의 제조	
1.2.5 최신 기술을 사용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 식품 원료 또는 영양제(dietary supplement) 제조	설탕 및 알코올 음료 제조는 촉진 대상이 아니다.
1.2.6.4 의료용 식품 제조	1. 설탕과 알코올 음료 제조는 촉진 대상이 아니다.

	2. 프로젝트는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시작 전에 식약처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갖춘 기타 기관에서 “의료 식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1.2.8.3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한 동물 사료 또는 동물 식품 원료의 제조	프로젝트는 국제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예) HACCP, GMP 등 인증서는 완전조업(full operation) 시작 전에 획득해야 한다.
1.2.9 농산물, 부산물, 또는 농업 폐기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포장재 제조, 또는 부산물이나 농업 폐기물에서 발생한 원료로 제품 제조	
1.2.10.1 농산물로 연료 제조 또는 제약용 알코올(Pharmaceutical grade alcohol) 제조	
1.2.11.2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 연속 공정에서 파생된 천연 추출물 또는 천연 추출물로부터 제품 제조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연속적인 공정에서 발생한 천연 추출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허브 상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청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 허브 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등록은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시작일 전, 그리고 법인세 면세 소득에 관한 인센티브를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2.11.3 천연 추출물에서 제품 제조 또는 천연원료에서 추출 제조 공정 없이 허브제품 생산	1. 허브 상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청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 허브 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제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등록은 완전 조업 시작일 전, 그리고 법인세 면세 소득에 관한 인센티브를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프로젝트는 국제 표준을 취득해야 한다. 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 표준 인증서는 완전조업(full operation) 시작 전에 취득해야 한다.
1.3.1 식물 또는 동물 육종(바이오 기술에 속하지 않는 활동만 해당)	농업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정책에 따라 민감한 식물을 육종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최소 5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태국인이 보유해야 한다.
1.4.2 농작물 건조 및 사일로 시설	
1.4.3.2 최신 기술을 사용한 농산물 등급 분류(Grading) 및 저장	1. 프로젝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 색깔 분류기, 과일에 생기는 파리 알을 방제하기 위한 증기 열처리 시스템, 종자 코팅, 가스치환포장

	<p>방식(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p> <p>2. 쌀의 등급분류(grading rice)와 저장은 촉진 대상이 아니다.</p>
1.4.3.3 최신 기술을 사용한 쌀의 등급 분류 및 저장	
1.4.4.2 냉장저장, 또는 냉장저장 및 냉장운송	
1.4.5 농산물 거래 센터	<p>1. 전체 면적은 최소 10 라이(1라이는 약 489평에 해당함) 이상이어야 한다.</p> <p>2. 농산물 관련 운영 및 서비스 구역의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최소 60%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 전시회 또는 거래를 위한 공간, 경매 센터, 냉장 저장소 및 사일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3. 농산물에 대한 검사, 등급분류 및 살충제, 유해 물질의 잔류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p>
(2) 의료제품 제조 및 서비스	
2.1.1.1 부직포 제조	
2.1.1.2 부직포 위생 제품의 제조	
2.1.2.1 고위험 또는 첨단 기술 의료기기	
2.1.2.2 기타 의료기기의 제조	<p>직물 또는 섬유로 제작된 의료기기는 촉진 대상이 아니다.</p>
2.1.2.3 직물 또는 섬유로 의료기기 제조	<p>1. 프로젝트는 직물이나 섬유로 의료기기를 생산해야 한다. 예) 가운, 기저귀, 모자, 안면 마스크, 거즈, 탈지면 등</p> <p>2. 거즈 또는 탈지면의 제조는 원면 직물 또는 면실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p>
2.1.2.4 의료기기 부품의 제조	<p>프로젝트는 ISO 13485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의료기기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은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전에 취득해야 한다.</p>
2.1.4.1 목표 약품의 제조	<p>1. 촉진신청 제출 당시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발표한 목표 약품 리스트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p> <p>2.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에 따라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 GMP(Good Manufacture Practice)</p> <p>인증서는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전에 취득해야</p>

	한다.
2.1.4.2 전통 의약품 제조	<p>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에 따라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 GMP(Good Manufacture Practice)</p> <p>인증서는 완전 조업(Full operation) 전에 취득해야 한다.</p>
2.2.1.1 특수의료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국 내 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 의료 원이어야 한다. 예) 심장 관련 분야 (관상 동맥 질환, 심장 수술 및 심부전), 암 관련(화학 요법 및 방사선과), 신장 관련(투석 센터), 물리치료 및 정신과 2. 적합한 인력 고용에 대한 계획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도구와 장비를 갖춘 프로젝트여야 한다. 4. 의료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면허 취득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사용하기 전, 그리고 완전조업(Full operation)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전문 표준에 대한 규정 또는 보건부의 기타 관련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6. 서비스 분배와 센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7.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타 분야의 서비스를 환자와 이용자에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장비가 허용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혜택을 위한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2.2.1.3 전통 또는 응용 태국 의료 공공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면허 취득은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을 사용하기 전, 그리고 완전조업(Full operation)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문 표준에 대한 규정 또는 보건부의 기타 관련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2.2.2 건강재활센터	1.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단, 마약 중독자의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야간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3) 자동차, 기계 및 부품의 제조	
3.1.2 기계, 장비 및 부품 및/또는 금형 (mould and die)의 수리	부품 성형 공정 및/또는 엔지니어링 설계 공정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한다.
3.1.3 기계 및/또는 기계 장비의 조립	위원회에서 승인한 조립 공정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한다.
3.4.4 다목적 엔진 또는 장비의 제조	
3.5.5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의 제조	
3.5.17 기타 자동차 부품의 제조	
3.7 오토바이의 제조(배기량 248 cc 미만 제외)	1. 구조적 용접 공정 및 스프레이 페인팅 공정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하며, 이는 자사 또는 다른 제조사를 통해 진행해도 된다. 2. 부품의 제조 및 이용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기 전자 제품의 제조	
4.2.4.3 유연 인쇄회로기판, 다층 인쇄회로기판 또는 부품의 제조	
4.2.4.4 인쇄회로기판 또는 부품의 제조	
4.2.5.3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CBA)의 제조 또는 동일 프로젝트에서 PCBA 다운스트림 제품 제조	
4.2.7.3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또는 주요 부품의 제조	1.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및/또는 주요 부품을 제조하는 프로젝트 예) 스피들 모터, 서스펜션, 헤드 짐벌 어셈블리 및 보이스 코일 모터 등 2. 탑 커버 또는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주변기기의 제조는 촉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기존 기계의 보수 비용은 투자로 간주되어 법인 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 계산 시 고려된다. 기존 기계의 취득가액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4.2.7.4 탑 커버, 베이스 플레이트, 핀, 필터 등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타 부품의 제조	
4.2.7.5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기타 메모리 저장 장치의 제조	
4.2.14.2 시청각 제품 및 부품 제조	
4.2.15.2 사무용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4.2.20 기타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4.3.5 전자제품용 컴프레서 및/또는 모터 제조	프로젝트에 권선 공정(coil winding process)이나 고정자(stator) 또는 회전자(rotor) 조립(fabrication)이 있어야 한다.
4.3.6 기타 전기 제품, 장치 및 부품 제조	
(5) 세라믹 제품, 금속 및 재료 제조	
5.2.2.3 세라믹 제품 제조	성형, 소성 및/또는 열처리(annealing) 공정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한다.
5.2.3 내화성 소재 또는 열 절연재의 제조 (경량기포벽돌(aerated, lightweight brick) 제외)	
5.2.5 공공 시설용 건축 자재 제조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제조	본 프로젝트는 법인 소득세 정상 세율에서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5.4.15 건설 또는 패브리케이션 산업용 메탈 플랫폼 제조	본 프로젝트는 법인 소득세 정상 세율에서 50% 감면 대상이 아님
(6) 플라스틱 제품 및 펄프 제조	
6.4.1 산업 제품 및 부품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 성형 공정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한다.
6.4.2 소비재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 포장 등)	본 프로젝트는 법인 소득세 정상 세율에서 50% 감면 대상이 아님
6.4.3.1 공압출 공정을 통한 다층 플라스틱 포장	3겹을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이어야 한다.
6.4.3.2 라미네이션 공정 또는 라미네이션과 공압출 공정을 합한 방법으로 다층 플라스틱 포장	4겹을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제품이어야 한다.
6.4.4.1 클린룸 표준 인증을 받은 무균 플라스틱	클린룸 표준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여야 한다.

포장재 제조	예) ISO 14611 레벨 7(클린룸) 또는 미국 연방표준 209 E 클래스 10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표준 인증 해당 인증은 법인소득세 혜택을 사용하기 전, 그리고 완전 조업을 시행일 전에 받아야 한다
6.4.5 정전기 방지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클린룸 표준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여야 한다. 예) ISO 14611 레벨 7(클린룸) 또는 미국 연방표준 209 E 클래스 10000 해당 인증은 법인소득세 혜택을 사용하기 전, 그리고 완전 조업을 시행일 전에 받아야 한다
6.4.7.2 같은 프로젝트에서 관련된 제품을 포함한 재활용 플라스틱 펠릿 제조	1. 전체 플라스틱 원료의 70% 이상을 플라스틱 스크랩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중량 기준) 2. 태국 국내 플라스틱 스크랩만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6.5.3.2 재생 펄프 생산용 수입 폐지(paper scrap)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프로젝트에서 관련 제품을 포함한 재생 펄프의 제조	같은 프로젝트에서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전체 원료의 80% 이상을 재생 펄프(자체 생산)를 사용해야 한다. (중량 기준)
6.6.7 펄프나 종이(종이 박스 등)로 제품 생산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정상 세율에서 50% 감면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9.14 인쇄물 제작	
(7) 공공 유틸리티	
7.1.1 쓰레기 또는 폐기물에서 유래한 연료를 통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 생산	
7.1.2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의 재생에너지에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 생산(쓰레기 또는 폐기물에서 유래한 연료 제외)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각 배전 지점에서 태양 전지 용량은 200킬로와트 이상 되어야 한다.
(8) 산업 구역 또는 산업 단지	
7.2.1 산업 구역 또는 산업 단지	1. 프로젝트는 태국 국적자의 지분이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2. 프로젝트의 전체 토지면적은 최소 500 라이(1라이는 약 489평에 해당함)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장용지는 전체 면적의 최소 60% 이상 75%

	<p>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전체 면적이 1,000 라이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공장용지의 면적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4.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p> <p>4.1 주요 도로</p> <p>(1) 전체 면적이 1,000라이 이상인 경우, 주요 도로는 전체 너비가 최소 30미터 이상인 4차선 도로여야 하고, 노면 폭은 최소 1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섬(traffic island) 및 양측 보도의 폭은 최소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갓길 및 노면은 긴급 정차를 하기에 충분한 너비여야 한다.</p> <p>(2) 전체 면적이 500라이 (1라이는 약 489평에 해당함)이상 1,000라이 미만인 경우, 주요 도로는 전체 너비가 최소 20미터 이상인 2차선 도로여야 하고, 노면 폭은 최소 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섬(traffic island) 및 양측 보도의 폭은 최소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갓길 및 노면은 긴급 정차를 하기에 충분한 너비여야 한다.</p> <p>4.2 보조 도로는 노면 폭이 최소 8.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 갓길의 폭이 최소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4.3 폐수 처리는 폐수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고 법적 배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프로젝트는 폐수 종말처리장을 갖추어야 한다.</p> <p>4.4 폐수 배출 시스템은 빗물 배출 시스템과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p> <p>4.5 프로젝트는 투자청이 승인한 바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제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p> <p>4.6 산업구역에 위치한 공장은 천연자원 및 환경 정책기획청(ONEP) 전문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 산업 및 금지 산업 분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p> <p>4.7 산업구역은 충분한 공공 유틸리티, 전기, 수도, 전화 및 우체국을 갖춘 공장을 제공해야 한다.</p> <p>4.8 산업구역은 투자촉진 혜택 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토지면적의 약 25%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면적을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용으로 개발해야 한다.</p>
--	--

7.2.3.3 보석 및 장신구 산업구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는 태국 국적자의 지분이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체 면적은 최소 100라이(1라이는 약 489평에 해당함) 이상이어야 한다. 3. 보석 또는 장신구와 관련된 운영 구역은 전체 면적의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보석 및 장신구 판매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5. 프로젝트는 적절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6. 프로젝트는 회의실, 전시홀 및 비즈니스 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7.2.3.4 물류 파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국인이 등록자본금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 전체 면적은 최소 200라이(1라이는 약 489평에 해당함) 이상이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전체 면적이 최소 5만 m² 이상인 임대용 또는 판매용 창고의 설립에 투자해야 한다. 3. 항구, 공항, 세관 검문소 및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로부터 50 km 이내 또는 자유구역(Free Zone)에 위치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5. 프로젝트는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한 스테이션 또는 트럭 터미널 및 최소 50개의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지를 갖추어야 한다. 6. 프로젝트는 물류파크와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허브를 연결하는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주요 통신 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
7.2.4 산업 플랜드와 창고용 건축 개발	프로젝트는 정상세율에서 50%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
(9) 섬유, 의류 및 가죽 제품의 제조	
9.4 재활용 섬유 제조	태국 내 폐기물만 사용해야 한다.
9.5 기타 섬유 또는 원사 또는 직물의 제조	
9.7 의류 및 가정용 직물 제조	

9.8 가방 또는 신발 또는 가죽이나 인공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제조	
9.10 스포츠 장비 또는 부품의 제조	
(10) 보석 및 장신구 제조	
9.9 원재료와 시제품을 포함한 보석 및 장신구 또는 부품의 제조	
(11) 가구 제조	
9.12 가구 또는 부품 제조	
(12) 관광 촉진 서비스	
10.8.1 페리 서비스 또는 관광 보트 서비스 또는 관광 보트 대여 서비스	다른 사람의 보트 대여 서비스를 위한 베어보트(Bare-boat) 대여 서비스는 촉진 대상이 아니다.
10.8.2 관광 보트 항만 서비스(Tour boat port service)	보트 리프팅 장비, 내륙 보트 데크, 유지 보수를 위한 보트 보관소 등의 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0.8.3 놀이 공원	1.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최소 5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8.4 태국 문화센터 또는 태국 예술공예센터	1.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최소 3,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연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태국인이 등록자본금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10.8.5 개방형 동물원	1.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최소 5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체 면적은 최소 500라이(1라이는 약 489평에 해당함)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체 면적의 15%는 녹지대로 할당하고 또 다른 15%는 주차장으로 할당해야 한다.
10.8.6 박물관	1. 투자자본(토지 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최소 3,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프로젝트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9.2 컨벤션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면적은 최소 4,000 m² 이상이어야 한다. 가장 큰 홀의 전체 면적은 최소 3,000 m² 이상이어야 한다. 2.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9.3 국제 전시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내 전시 공간은 최소 25,000 m² 이상이어야 한다. 2. 모든 홀은 비즈니스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3) 서비스	
10.7.1 직업훈련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설계를 포함한 특정 분야의 기술 과정을 가르치거나 훈련시켜야 한다. 2.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9.16 영화 지원 서비스 (Motion picture support service)	<p>영화(Motion picture) 지원 서비스는 영화(movie),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및 광고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사업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제작 장비 및/또는 소도구 대여 서비스는 카메라, 그립 장비, 조명 세트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 2. 필름 현상 및 복제 서비스는 필름 현상기, 필름 복제기, 디지털 필름 복제기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 3. 녹음 서비스는 디지털 녹음기, 디지털 사운드 편집기, 디지털 사운드 믹싱 장비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 4. 전문 영상 서비스(picture technical service)는 카메라만으로 불가능한 특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표준해상도/고해상도 디지털 녹화기, 편집 스위트, 디지털 영상 합성 장비, 특수 효과 장비 등의 주요 장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 5. 태국 내 외국 영화 제작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비스에는 허가증 발급을 위한 유관 정부기관과의 조율, 촬영 로케이션 섭외, 스태프 모집 및 영화 장비의 조달과

	<p>같은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p> <p>6.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표준화된 스튜디오 대여 서비스(실내 및 실외 스튜디오)</p>
10.10.7 컨테이너 야드 또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s)	
10.11.2 국제 유통 센터 (IDC: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입 등록자본은 최소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하는 제품 보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3. 최소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최소 5개국을 대상으로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고객의 해외 유통 상품을 관리해주는 비용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10.11.3 유통센터(DC)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입 등록자본은 최소 1,0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하는 제품 보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